

서면답변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유 인 환 위 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산림과장)	답변일자	2006. 11. 30.
회 의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문요지

- 토사채취허가와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관련법규 제출

답변내용

- 불임참조

地

地

地

地

地

地

地

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에 서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변경 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4. 위 표의 가목(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위 표의 가목(3)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위 표의 가목(15) 및 (16)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그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7. 위 표의 마목(2)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구분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표에서 "허가"라 한다) 전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차목(별표 20 제2호차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사업의 허가 전
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적용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동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핵심구역 : 5,000제곱미터 (나) 완충구역 : 7,500제곱미터 (다) 전이구역 : 10,000제곱미터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라.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환경수계 상수원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가. 그 밖의 개발사업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4)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존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지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허가 전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시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방사업,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은 위 표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3의2.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청정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버목에 따른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

영역(이하 "영역"이라 함)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지환경영점토대상에 포함한다.

4. 위 조항의 규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 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목 내지 다목 내지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란의 지역·지구·구역·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영점토대상에 포함한다.

$$\frac{\text{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text{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 + \frac{\text{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text{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 + \dots$$

5의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결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영점토대상에 포함한다.

7. 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결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영점토대상에 포함한다.

-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
-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영점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환경영점토대상 시행령 별표

[별표 3] <개정 2006.5.30>

중점영점토대상·의견수렴방법·환경영점토대상의 구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행정계획의 범위 (제8조제6항·제8조의2제7항 및 제8조의3제7항관련)

구 분	행정 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나.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다.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2)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라. 철도의 건설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바.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사. 특정지역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